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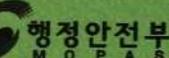
인권교육전문가 1차 교육교재

지적장애인 인권교육전문가 1차 양성교육 교재

지적장애인 인권교육전문가 1차 양성교육 교재

일 시 : 2008. 7. 16(수) ~7. 17(목)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5(4층)

지 원 :  행정안전부
MOPAS

주 최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4층
TEL : (02) 592-5023~4 FAX : (02) 592-5026
<http://www.kaidd.or.kr>

사단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단
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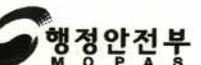
인권교육전문가 1차 교육교재

지적장애인 인권교육전문가 1차 양성교육 교재

일 시 : 2008. 7. 16(수) ~ 7. 17(목)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5(4층)

지 원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주 최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지적장애인 권리선언

제1조 지적장애인은 국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지적장애인은 그 상태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지적장애인은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생산적이며 뜻있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지적장애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회생활에 참가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적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은 부조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시설에서의 양호가 필요한 자라면 그 시설은 최대 한도로 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 지적장애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지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자격있는 후견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6조 지적장애인은 착취와 남용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고소를 당한다면 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제7조 지적장애인의 중증으로 그 모든 권리를 유용하게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그 권리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이에 적응하는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적장애인 인권교육전문가 1차 양성교육 일정

일정	강의내용	비고
(첫째 날)		
12:30~13:00	접수	
13:00~13:20	개회식 및 인사말씀	
13:20~15:20 (120분)	인권의 의미 찾기 -인권이란 무엇인가? -	박김형준 활동가 (다산인권센타)
15:20~15:30	휴식	
15:30~18:00 (150분)	인권의 개념과 역사	류은숙 연구활동가 (인권연구소 '창')
18:00~19:00	석식	
19:00~21:30 (150분)	장애인과 인권	박숙경 연구원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21:30~21:40	휴식	
21:40~23:00 (80분)	인권에 대한 집단토론	박미진 기획과장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23:00~	휴식 및 취침	
(둘째 날)		
08:00~08:40	조식	
8:40~11:10 (150분)	인권담보를 위한 우리들의 실천	윤덕찬 원장 (교남어유지동산)
11:10~11:20	휴식	
11:20~12:40 (80분)	생활시설 내 장애인인권교육 실제	신가을 사회복지사 (가온들찬빛)
12:40~13:00	평가	
13:00~	중식 및 귀가	

목 차

◆ 인권의 의미 찾기	1
◆ 인권의 개념과 역사	7
◆ 장애인과 인권	31
◆ 인권에 대한 토론	61
◆ 인권담보를 위한 우리들의 실천	65
◆ 생활시설 내 장애인인권교육 실제	107
◆ 부 록	135
【부 록1】 각종 사업 양식	137
【부 록2】 지적장애인 및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162
【부 록3】 인권관련 국내·외 인권규정	323
【부 록4】 교육 참가 기관 연락처	358

인권의 의미 찾기

◀ 인권이란 무엇인가?

▶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

인권이 무엇일까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다섯 가지 정도만 적어보세요. 그림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인권은 밥이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이고, 누군가에게는 나라(국가)를 가지는 것, 편리한 세상, 차별 없는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인간됨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지요.

그런데 우린 너무 오래 인권은 멀다, 인권은 크다, 인권은 시시하다, 인권은 거짓말이야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권의 오래된 거짓말도 들추어 보고 인권의 잘못된 관행도 알아내고, 그래서 진정 가깝고 친근하고 거짓말하지 않은 인권을 만나봐야겠습니다.

1. 인권은 천부가 양도했으나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200년 전만하더라도 인권의 주인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백인이며 비장애인이며 자본가이고 이성애자인 어른 남성’ 이었습니다. 노예나 유색인종이나 장애인, 동성애자, 어린이, 여성은 인권의 주인이 아니었지요. 노예 등은 다만 인권을 누리는 그 남성들의 자비로우며 현명한 주인의 은총 안에서만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천부가 주었다고 아름답게 포장된 인권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가지게 되었습

니다. 먼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여성들이 참정권운동을 했으며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며 세상 밖으로 나왔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면서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 편리한 생활을 누릴 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인권이 혜택 받은 어떤 인간들의 것이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턱은 아직도 높기만 해서 인권의 이상향이 아름다운 말(수사)안에 갇혀있지만 한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인권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의 주인인 사람들이 인권을 얻기 위해 많이 싸우고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2. 누구나 누려야하는 권리 인권

현실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자가 자본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서울의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여성들의 필수품인 생리대는 비싼 세금이 매겨지며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헐값에 노동력을 팔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망만 하자구요? 그건 아닙니다. 인권은 누구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만들자는 것이지요.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사람들의 관념을 변화시켜야하지요.

3.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 인권

이가 없어도 음식을 씹을 수 있지만 잇몸이 없으면 음식을 씹을 수 없습니다. 인권은 그런 것이죠. 내 취향에 따라 선택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과 나의 행복과 나의 인간됨을 위해서 너무나 기본적인 것 그것이 인권입니다. 우리가 아는 무수한 권리들과 인권이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4. 인권은 법보다 위에 있는 것

어떤 법은 인권을 위해하는 나쁜 법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람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

유를 위협하고, 청소년 보호법은 성소수자를 변태나 비정상인으로 규정해서 인권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인권은 법이나 제도보다 우위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합니다. 이것은 나쁜 법, 이것은 좋은 법, 이것은 좋은 기관이며 제도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인권의 기준입니다.

5.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외계에서 뚝 떨어져 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속에 함께 포함되어 살아가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때 내 권리를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자칫 ‘의무를 행사한 다음에 권리를 행사해라.’라는 이야기와 혼동되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써 누릴 권리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존중되어야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격이 좋지 않다고 따돌림을 당하면 안되는 것처럼, 아무리 흉악무도한 범죄를 지었다고 사형을 당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그러나 한편으로 인권에 있어서 의무의 중요한 당사자는 국가와 제도입니다. 개인간의 갈등의 원인을 개인 사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이며, 원인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까라고 논의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에 맞습니다.

6. 개인의 자유와 인간다움을 유지할 권리는 모두 중요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공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구제받고 공평한 행복을 누릴 권리’ 역시 아주 중요한 인권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다 아주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 평화의 권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정치적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이주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모두 인권입니다.

읽어보니 인권의 영역이 무진장 넓지요?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적, 제도적, 관념적 기반이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이 모두 나를 위해서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7. 우리 속의 편견 고치기

우리는 ‘다수가 말하는 것이 옳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내가 속한 사회만이 정상적이다.’ 라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은 ‘소수자에게 세상이 변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비정상적인 선입견에 회생당해온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붉은 악마들의 열기가 뜨겁던 2002년 월드컵의 한국사회, 모든 일간지와 방송을 덮었던 붉은 물결들 사이에, 축구공을 꼬매다가 시력을 잃은 인도 어린이의 이야기는 가십 거리에 불과했으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한줄 기사로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고집스런 편견은 많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현실을 비관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가 만든 가족만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때, 이 흔하지도 않은 가족이데올로기는 성소수자들, 비혼모 가정의 엄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비정상의 굴레로 내던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먼 이국땅의 전쟁에,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곳으로 군인들을 보낸다는 정부와 그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권은 무덤에 있는지, 화려한 말잔치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권을 실현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과 사소한 욕심과 고집스런 관행에 갇혀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때 우리

의 선택은 편견을 깨고 욕심을 접고 관행을 저버리는 것이어야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인권은 현실 속에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힘차게 굴러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수자의 눈으로 말입니다.

인권의 개념과 역사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인권의 개념과 역사

인권연구소 '창'
류 은 숙 활동가

왜 인권 '이론'을 공부하는가?

인권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인간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사실로 인해 사람이 누리는 권리로서 다른 어떤 보충하는 조건도 필요치 않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유아, 정신능력 상실자 등).

하지만 이점을 벗어나고 나면 인권에서 명확한 것은 별로 없다.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인권의 의미가 다르고, 견해에 따라 인권이 이해되는 바도 다르다. 이런 점을 따져보지 않고 그저 인간에게 좋은 모든 것을 '인권'이라 얘기하는 것으로는 인권의 실천과 실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간에게 좋고 소중한 모든 것을 꼭 인권이라 얘기할 이유도 없다. 인권은 법적 논의와 도덕적 논의 양쪽에 다 걸쳐 있는데 현실에서는 법적 권리의 측면이 강조된다. 이걸 넘어서는 가치논의를 인권에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에서 인권은 서로 경합한다. 흔히 이익과 혼동된다. 이익과 인권간의 선은 불분명하다. 그래서 '어떤' 인권을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을 위해 옹호하느냐는 논의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시장에서의 무한경쟁만이 펼쳐질 뿐이다.

인권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참여와 실천과 토론을 통해 규정되고 재해석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노력 중 하나가 인권 이론에 대한 공부일 것이다.

인권은 특정 시대와 조건의 산물이기에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고 실천하려는 모

든 노력이 인권과 등치될 수는 없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인권이 포함되는 관계라고 봐야 한다.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인권,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그인권)

인간의 자유를 향한 여정에 인권을 이정표 삼아 나아가고자 한다면, 인권에 대해 알고 분석하고 창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권의 정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권리’의 종류도 많고 권리주장과 권리다툼도 흔하다. 하지만 모든 권리 주장을 ‘인권’으로 대접하지는 않는다. 흔히 권리 주장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 가령 구매나 획득을 증명하는 문서라든가 계약서, 특정한 자격요건 등이다. 그런데 당신이 ‘인간’ 이란 사실 말고는 다른 어떠한 보충하는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갖는 권리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사실 만으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이란 것 외에 어떠한 추가 요건도 필요치 않으므로 인권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인종, 피부색, 성, 국적 등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과 배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갖는 당연한 권리’, ‘불가양불가침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한 권리’ 등으로 얘기돼왔다. 보통의 권리들과 구분되는 인권의 특성에 대해 좀더 생각해보자.

인권의 특성

첫째, 인권은 그 권리 주체나 의무 담지자가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가령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처럼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달리 인권은 그 주체나 그 상대방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인권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유아나 법적으로 행위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인권의 주체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가 보편적 인권의 주요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말할 때는 우선은 국가권력이나 조직 또는 집단의 책임성이 강조된다. 이를 권력기관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과 그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인권은 권력의 자의성과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이들 권력기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생명을 존중할 의무’를 생각해보자. 당연히 국가기관은 고문이나 학대 등을 삼갈 의무로부터 환경오염의 방지, 기초적 보건복지제도를 운영할 의무 등을 진다. 기업은 안전하고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민간단체 등 사회기관은 생명의 존엄성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의무가 있고, 모든 개인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해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하며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둘째, 인권은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권리이다.

가령 난 힘이 세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이용하고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동료 인간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반면 모든 사람은 폭행, 고문, 강간, 언어폭력 등과 같은 잔혹하고 모욕적인 취급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마땅하다’는 공감을 얻을 것이다. 이처럼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부정당한 사람들의 외침은 도덕적 공분을 자아내고, 인간다운 사회라 한다면 당연히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과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인권은 실정법에 대해 우선성을 갖는 도덕적 권리다.

물론 인권은 도덕적 권리일 뿐 아니라 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이행 가능한 법적 권리일 때 인권은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오늘날 인권은 국내법 뿐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국제 법적 근거를 가진 권리이다.

하지만 모든 인권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실정법으로 보장돼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권리가 아닌 인권에 호소하게 되는 것은 현실에서 이행 가능한 실체적 권리가 없거나 실체적 권리

규정이 오히려 인권에 반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나치의 유대인 차별과 학살은 분명 반인권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었지만 당대의 ‘합법적’ 행위였다. 미국이나 남아공에서 자행됐던 인종분리정책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오랜 탄압은 ‘실정법’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은 실정법을 어기며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일을 감수하며 인권을 요구했다.

또 다른 예로 모든 사람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있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그런 기본적 권리로부터 소외됐다. ‘이동권’이란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나서야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매 맞는 아내나 아이의 문제는 사생활로 치부돼 방관됐다. 오랫동안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나서야 가정폭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 생기게 됐다.

이처럼 당대의 실정법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또는 그를 보장하는 실정법이 없다고 해서 인권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인권은 실정법에 우선해서 실정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며 개선 내지 개혁해야 할 방향성을 지시하는 잣대가 된다.

넷째, 인권으로 보장되는 내용은 인간 존엄성에 매우 중대하며 긴급한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인권에는 이런 말이 통할 수 없다. 유엔은 인권을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권리들”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인권은 그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사회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사회가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이며, 그것 없이는 기타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필수적인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이동권’을 주장한 한 장애인은 “이동을 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어야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동할 수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며 이동권에 대한 공감을 구했다. 이처럼 그것 없이는 인간이 여타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동권’은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유형

‘인권’이라는 용어는 생명권에서부터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의 권리들을 지칭한다. 물론 이들 권리들은 인간의 존엄한 삶에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들이다. 이들 권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데, 국제 인권법에서는 흔히 ‘시민·정치적’ 권리를 한축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다른 한축으로 분류한다. 어떤 방식으로 인권을 분류하든 간에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상호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어떤 인권이건 인간 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하기에 모든 인권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위계적 순서 속에 놓일 수 없다는 것이 상호불가분성이다. 어떤 하나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여타 인권의 향유를 방해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나 교육권이나 건강권을 대가로 지불하고는 실현될 수가 없다.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도 마찬가지다. 각 인권의 실현은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인권의 실현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건강권의 실현은 정보에 대한 권리나 노동권·교육권 등이 실현되는 환경에 달려있다.

(1) 시민 · 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의 앞부분 18개조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의 대부분의 조항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국가권력이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침해돼서는 안되는 개인의 삶의 특정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시민적 권리에는 ‘신체적 보전’에 대한 권리,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정당한 절차’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생명권,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형벌·자의적인 체포·구금·추방·노예 또는 예속상태·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앞서 말한 시민적 권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 및 사회의 공적 업무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가 있어야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정치적 권리들은 세계인권선언 19조에서 21조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18, 19, 21, 22, 25조)의 주요 조항에 규정돼있다. 그 주요 내용은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 등이다.

(2) 경제·사회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22조에서 26조에 해당하는 권리이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에 좀더 상세히 규정돼 있다. 경제·사회적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다시 세분화하면 경제적 권리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등 노동권을 주축으로 한다. 사회적 권리는 건강권, 주거권, 식량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필수적인 권리들을 말한다.

(3) 문화적 권리

문화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27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15조 및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27조에 규정돼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 등이다.

의무의 유형

흔히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인권의 논의와 실천을 여러모로 방해해 왔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시민·정치적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실체적 권리이며, 그 이행에 자원이 필요치 않고, 국가가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 소극적 의무를 지는 권리이므로 즉각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한다. 반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자원 투입이 요구되고, 그 이행에 자원이 많이 들며,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사회정책이나 제도의 방향성을 뜻할 뿐이므로 점진적으로만 실현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이분법은 국내외적으로 축적된 많은 판례와 인권 포럼 등을 통해 비판받았고, 양 범주의 권리간의 상호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은 거듭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양 범주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는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80년대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지지를 받게 됐다. 이에 따르면 모든 기본적 (시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는 세가지

유형의 상관된 의무가 있다.

(1) 존중의 의무

존중의 의무는 개인들로부터 권리의 향유 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들 권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삼갈 것을 국가에 요구한다. 간단히 말해,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보호의 의무

인권침해는 국가당국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저질려진다. 보호의 의무는 이들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국가에 요구한다. 보호의 의무는 사회 구성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만 하는 것으로 국가의 핵심 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보호의 의무는 ① 어떠한 개인이나 비국가 행위자(초국적 기업 등)에 의한 권리 침해를 방지할 것 ②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를 유인하거나 자극하는 동기가 되는 것을 피하고 근절할 것 ③ 장래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 등을 국가에 요구한다.

(3) 실현의 의무

개인은 실업,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적 생활을 개인적 노력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실현의 의무’란 이런 때 국가가 자기 관할권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기본적 필요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언뜻 보기에도 실현의 의무는 경제·사회적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고문의 금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찰 및 법집행공무원을 적절히 훈련시키고 예방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법원과 판사 등에 대한 투자를 요구한다. 즉 실현의 의무는 모든 인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목표로 그를 위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의무를 말한다.

인권의 역사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은 더 크고 완전한 자유를 갈망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정치, 경제, 철학, 도덕, 종교 등 모든 분야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은 그러한 갈망과 관심의 한 과정이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생각과 노력을 ‘인권’이라 하지는 않는다. 인권은 특정 시대와 특정 사회를 배경으로 출현한 권리 개념이며,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온 역동적인 개념이다.

근대의 인권

(1) 전조

근대이전 인권사상이 출현하기 전에 권리와 자유는 ‘신분’과 ‘지위’와 결합된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특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시대에도 인권사상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는데 왕권과 귀족세력간의 대립 속에서 신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인하고 문서로 보장받는 일이 그것이었다. 대표적인 문서로 영국의 대헌장(Magna Charta Libertatum, 1215년)과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 평가리의 황금문서(Golden Bull, 1222)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문서에서 확인된 권리들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가령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세금이 과중할 때)에서 특수한 신분(봉건귀족과 제후들)의 사람들의 것이었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라는 관념은 신분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경제 및 정치 질서가 전개되기 시작한 18세기 계몽의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다. 경제적으로는 봉건제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전개, 정치적으로는 절대왕정을 극복하려는 자유주의가 그 내용을 이룬다.

(2) 자연권 사상

인권의 선조라 할 것은 ‘자연법’에 기초한 ‘자연권’ 사상이었다. 자연법은 말 그대로 자연의 이치인데, 그것이 현실의 실체법보다 우월하고 영원한 정의라는 것이다. 그런 자연법에서

끌어낸 권리가 자연권이다. 자연권은 인간본성에 자연적으로 내재한 권리로서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권리와 의무보다 선행하는 것이기에 어떤 권력으로도 빼앗거나 침해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연법은 시대에 따라 논자에 따라 그 의미와 활용이 다양했다. 어떤 시대에는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또는 현실의 불합리한 질서를 자연의 질서로 정당화하기 위해 자연법을 주창했다. 그런데 근대시민혁명의 이론가들은 당대의 현실을 뒤엎는 혁명적이고 반역적인 주장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고대의 자연법을 끌어들였다. 흡스, 스피노자, 로크, 루소 등 논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을 펼치기는 했지만, 어쨌든 현실의 실체법보다 우월하고 영원한 정의라는 것을 빌어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를 옹호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권리(1791)를 쓴 토마스 폐인은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의 보존에 있다. 이를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라 했고,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인간의 권리들을 제시하기로 결의” 한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은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보존...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 했다.

(3) 근대 인권의 이념

서유럽과 아메리카에서의 근대시민혁명, 즉 17·18세기에 잇따른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은 인권 이념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확립한 사건이었다.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 속에 성장한 신흥시민계급이 절대왕권을 타도한 지점에서 성립된 인권의 이념은 새로운 근대국가의 논리가 됐다. 이전에는 신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인권이 목적이고 국가권력은 각 개인이 가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바꿈된 것이다. 시민혁명에서 채택된 ‘인권선언’들은 이런 원리를 담았고, 헌법의 전문 형식을 띠면서 새로운 국가 체제의 경제적 기초와 정치구조를 밝히고 있다.

근대 인권 이념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의 주체는 ‘개인’인 인간을 전제로 한다. 구 신분질서 속에서 개인을 분리해내고 새롭게 펼쳐진 자유 시장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인간인 이상 본질적으로 자연적 권리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개인은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갖는다. 자연적 권리란 국가가 준 것이 아니라 국가 이전에 태어나면서 갖는 것이므로 어떤 국가권력으로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의 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또는 ‘자유권적 인권’이라고 불리우는데 국가가 개입과 간섭만 하지 않으면 인권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자유를 보장해주기만 하면 개인들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생존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자유가 근대 인권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4) 근대 인권의 주요 권리

근대 인권이 옹호한 자유는 크게 ‘재산권의 자유, 정신적 자유, 인신의 자유’이다.

근대 인권은 그 탄생 배경이 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전개와 발전을 위한 자유를 주축으로 했다. 그래서 핵심적 자유의 내용은 ‘소유권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상품 경제사회에 필수적인 것들이었다. 구 봉건시대와 달리 이제 토지와 인간의 노동력을 비롯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였기에 이런 자유들은 필수적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아형성과 정치활동에 필수적인 정신적 자유가 옹호됐다. 종교·양심·학문·표현의 자유 등은 오랜 관습과 미신, 맹목적 신앙, 종교적 불관용 및 절대왕권에 맞선 투쟁에 필수적인 것들이었다.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통치를 예측가능한 통치, 인간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 바꿔내는 투쟁에는 당연히 역암이 따랐다. 시민계급과 절대왕권과의 대립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금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돼갔고, 법적 정당성이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체포, 구금, 추방 또는 그밖의 신체적 강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인간의 권리가 옹호됐다.

(5) 근대 인권의 한계

근대 인권은 신분제도의 철폐, 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법의 지배 등 인간 사회에 분명 큰 진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시대적·현실적 제약과 근대 인권의 논리에 내재된 한계를 또한 갖고 있었다.

먼저 시대적·현실적 제약성을 살펴보면, 근대 인권에서 철저하게 보장된 자유는 ‘소유권의 자유’에 한정됐다. 정신적 자유, 인신의 자유 등 여타의 권리들은 선언됐을 뿐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완전했다. 인권선언에서 찬란하게 선포된 자유들을 외치고 누릴 수 있었던 건 소유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즉 소수 재산가에 한정됐을 뿐이었고 대다수 보통사람에게는 거리가 멀었다.

대표적인 예로 참정권은 일정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80% 가량이 유권자가 되지 못했다. 사상·표현의 자유는 시민계급이 장악한 의회의 독점적 자유로 여겨지고 보통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유보하거나 제약하는 법률들이 속속 제정됐다. 모든 사람의 불가침의 권리를 선포했지만 여성과 가난한 노동자, 유태인, 식민지 민족, 노예 등 다수의 사람이 권리 주체에서 배제됐다.

둘째 근대 인권의 논리에 내재된 한계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 이란 구호에 담긴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보편성이다.

신분질서를 뒤로 한 새로운 사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태어난 신분에 따라 특정 지역과 노동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자유를 갖고 마음대로 이동하며 직업을 선택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일할 수 있게 됐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랬다. 따라서 귀족도 자본가도 노동자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었다. 이런 시민들이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시장에서 평등하게 계약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근대 인권의 논리였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의 사회경제적 힘 관계에는 염연한 차이가 있다. 거대 공장과 자본을 가진 기업이나 대토지 소유주의 재산권과 자기 몸이나 한 폐기 땅밖에 없는 노동자나 농민의 재산권은 성격이 매우 다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다 똑같다’고 취급하는 것은 사실상의 불평등과 경제적 약육강식을 묵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똑같이 ‘소유권’ 이란 인권과 그에 대한 법의 보장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그런 불평등한 재산소유를 근거로 해서 참정권 등 여타 권리의 향유에 제약을 가한 것이 근대 인권이었다. 이런 불평등도 원래 출발의 논리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 이었다는 것으로 합리화됐다.

따라서 근대인권이 선포한 자유와 평등은 현실속의 사회경제적 힘 관계를 무시했을 때 성립되는 추상적인 성격의 것이었지,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은 아니었다.

현대의 인권

인권에서 배제된 많은 사람들은 인권의 제한적이고 불평등한 적용에 반발했다. 근대적 인권이 구상한 인권의 주체와 내용에 수정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서 국가의 역할에도 변화가 따르게 됐다. 불개입이 최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게 됐다.

이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열악한 생활현실에 대한 노동자 집단 등의 저항,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과 대량실업,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국가의 성립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계심 등이 작용했다.

(1) 인권 주체의 변화

근대 인권의 주체는 철저히 ‘개인’ 이었고, ‘추상적’ 인 모든 사람이었다. 이에 현실에서 인권을 부인당한 사람들은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관계’에 주목했고, 개인의 취약성을 ‘집단’으로 보충하려 했다. 따라서 노동자, 농민, 여성, 흑인 등이 인권을 향유할 구체적 인간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대 인권의 대표적인 노동권을 보면, 현실에서 대부분 사람은 자기 노동력을 팔아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였기 때문에 노동자를 인권의 주체로 내세운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노동자 개인으로는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취약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의 결사로서 그 취약성을 보완하려 한 것이다.

(2) 소유권의 제한

근대 인권에서 가장 중시된 ‘소유권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의 무제약적인 지위를 누렸다.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기에 국가의 주요 임무는 ‘불개입’ 이었고, 재산권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사후적인 사법적 처리로 대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이런 자유방임주의가 계속될 수는 없었다. 불의와 폭력을 동반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식민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열악한 조건 때문에 ‘임금노예제’라 불린 노동현실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이에 소유권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여타 인권의 향유가 어렵다는 점,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생존을 확보할

길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근대적 인권에서 부르짖은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물질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시초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대다수의 국가가 소유권의 한계와 사회적 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소유권의 자유는 무제약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에 대한 의무를 수반하고 공공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된 것이다. 또한 ‘인권’으로서의 소유권의 의미는 재산의 배타성과 자의성의 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해돼야 했다. 이에 생존권 내지 사회권이라 불리는 권리들이 헌법과 제도로서 구체화되게 됐다.

(3) 현대 인권의 주요 내용

근대 인권의 핵심이 소유권이라면 현대 인권의 핵심은 생존권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원천인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가 생존권이다. 그저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말한다. 이같은 생존권에는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주거권·식량권 등 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 건강권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교육권에 대해 살펴본다.

① 노동기본권

생존권에는 대표적으로 노동기본권이 포함된다.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생존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권리, 강제노동 및 노예노동의 금지,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노동의 권리’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생활보장임금,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 승진에 대한 동등한 기회, 휴식·여가·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 등이 ‘노동조건에 대한 규정’이다. 또한 이들 권리가 개별적인 노사계약만으로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의 취약성을 단결로써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요구된다.

② 사회보장권

노동으로 생존을 확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은 사회와 국가에 대해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보장권은 이전 시대의 구빈이나 자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에는 개인의 생활 확보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봤기 때문에 생존권이 권리도 아니고 국가의 개입도 필요치 않았다. 자선이든 상호구제든 자율적 구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생활 불능을 개인의 잘못이나 모자람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굴욕적인 조건과 베풀어준다는 시혜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는 접근이 요구됐다.

사회보장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세계인권선언 22조) 생활곤궁이나 불능 상태를 전제로 한 인권이다. 시장의 자율만으로는 생존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모로 전개됐고,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구조적 모순을 인정하게 된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 것이다. 따라서 구빈의 차원을 벗어나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고, 사회는 자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사회보장권이다.

③ 교육권

교육권은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노동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훈련의 기회로서의 교육권이 필수적이다.

근대 인권에서는 교육을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자식을 교육시키는 일이라고 여겼기에 ‘교육의 자유’ 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현대 인권에서 말하는 교육권은 누구나 기회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즉 교육시설의 정비나 의무교육의 실시 등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개인의 정신적 자유에 간섭하는 도구로 교육을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대의 교육권은 정신적 자유에 대한 불간섭과 보편적 교육권 향유를 위한 능동적인 국가 행위 둘 다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에 국제인권준칙에서 보장된 교육권의 내용을 보면, 모든 아동에게 무상초등교육을 제공할 의무,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 교육시설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 교육을 선택할 자유, 학문의 자유보장, 비인도적인 처우와 훈육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세대 인권-연대권

지금까지 살펴본 인권의 전개가 서유럽과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펼쳐온 인권의 역사라면 2차 대전 이후 유엔의 설립과 함께 인권은 본격적으로 국제화된다.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피해자로서 인권의 역사에서 소외돼온 제 3세계는 유엔 설립 이후에

도 한참이 지난 60년대 말 70년대가 돼서야 인권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이들의 등장과 더불어 제3세계와 중심부 국가들 간에 양극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남북문제), 국제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위기 등의 국제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인권의 새로운 목록이 제기된다. 제3세대 인권 또는 연대권이라 불리는 권리들이다.

연대권의 범주에는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에 대한 권리, “인류의 공통유산”의 혜택에 참여할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산구제에 대한 권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 등이 속한다.

3세대 인권과 1·2세대 인권의 차이점은 3세대 인권이 국가 헌법의 영역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3세대 인권은 인민과 그들 자국 정부 간의 관계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3세대 인권의 주체는 ‘전체’로서 여겨지는 인민이다. 따라서 3세대 인권은 전통적인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집단적 권리의 유형이다. 이에 따라 이들 권리의 의무자는 한 개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정부와 국제 조직이다. 따라서 3세대 인권의 문제는 주로 국제인권법 영역에서 다뤄진다. 국제관계 분석에 더 강력한 ‘윤리적’ 요소를 주입하려는 시도 중의 하나이다. 지구적 문제는 한 국가만의 행동으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 평화유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없이는 국가들은 1·2세대 인권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차별이란

00 차별주의란, 한 00이 여타 00에 대해 갖는 타고난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며 따라서 지배의 권리다.

모든 사람은 한가지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중적 주체인데, 한 인간이 가진 다양한 성격 중에서 하나의 선택된 00으로 그 인간의 모든 것을 환원시키는 것이다.

인차별에 대해 던지는 질문

- ‘차이’를 다루는 개념 틀은 적절한가?
-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묘사한 것을 두고 보편적·정상적이라 하고 나머지 다른 것을 아니라 하는가?

- 위계 없이 나열되는 차이가 있는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강자의 인권’ 일 경우(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자본가의 인권 식으로)인권의 보편주의는 맥락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억압세력의 지배전략이 될 수 있다.
- 무수한 차이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임의로’ 선택되는가?
- 차이와 부정적인 표식, 그에 기반한 지배는 연결되지 않는가?
- 부정적인 표식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또는 집단)이 가진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타자의 시선이 아닌가?

차별의 위험성

- 차별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인종·계급·성적 억압 등은 서로를 구성하고 강화하며 지원 한다.
 - 억압받는 다수를 분열하고 경쟁하게 만든다.
- 예) 하층계급 백인 남성이 인종차별주의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는다. 인종주의가 심어준 우월성의 환상 때문에 자신들의 진정한 이익과 상충되기 마련인 지배 엘리트를 지지하게 된다. 남성이 여성과 아이들을 향한 폭력으로 분풀이한다.
- 일상적인 억압이 작동하지 않고는 구조적인 억압도 가능하지 않다.

차별의 위험성을 뒤집는다면?

- 억압의 다양한 형태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효과적인 연대를 수립한다.
- 차별의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억압받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끝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비생산적인 일에서 벗어난다.
- 차이는 문제될 것이 없다. 부정적 구별과 지배가 문제다. 다양한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으며 다양성의 향연을 벌인다.

법에서 차별을 다루는 접근법

법에서 평등을 논할 때 오랫동안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차이에 주목해왔다. 전통적으로 이 둘 간의 차이는 ‘법의 내용에 상관없이 법의 적용만을 문제 삼느냐?’ 아니면 ‘혜택과 부담의 정당한 분배 내지 일종의 사회정의의 요구 속에서 법의 내용을 문제 삼느냐?’이다.

이런 기본적인 구분에 기초해서 ‘실질적’ 평등에는 또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차이에 따른 다른 처우에 대한 인정이다. 여기에는 평등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의 적극적인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 ‘실질적’ 평등은 차이에 따른 다른 처우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둘째, ‘적극적 의무’를 실질적 평등의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는 차별을 방지하거나 차별로부터 보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받을 수 있다.

평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정교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차별은 지속적이다. 형식적 평등이건 실질적 평등이건 평등에 관한 법률규정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는 형식적 요소만 남게 되버린다. 이에 대한 비판들은 더 많은 실질적 평등을 주문하지만 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인권법에서 평등 문제에 대한 아주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크게 3가지 접근 이론에 기초해서 평등의 문제를 살펴보자.

형식적 접근

첫번째로 형식적 접근법이 있다. 이는 “엄격하게 똑같은 처우”, 대칭적 접근 또는 동일성의 접근이라고도 말한다.

‘같은 것은 같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성·인종·종교 등 특정한 구분을 아주 무의미한 것으로 본다. 성·인종 등의 특성이 아주 무의미한 것이므로 다른 처우로 귀결될 수 있는 ‘차이’를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동일한 처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불평등한 결과에 상관없이 동일한 처우를 강조한다. 이 접근법이 ‘대칭적’ 이란 의미는 불리한 집단에게 혜택을 주려는 다른 처우를 이미 특권층인 집단을 이롭게 하려는 다른 처우와 마찬가지로 유해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형식적 접근법은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한 처우’에 대한 강조는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와 직접 연결된다. 차별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장점이나 결점이지,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구조적 불리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에 대한 형식적 접근법으로는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되는 적극적 조치(차별수정조치)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이점은 국가의 수동적인 역할에 대한 강조와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에 요구되는 것은 적극적인 의무가 아니라 외적으로 명백한 차별을 삼가기만 하면 소극적 의무이다.

이 접근법의 강점은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니 간단명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이 접근법의 단점이 있다. 누가 똑같고 다른지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또한 처우의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는다. 또한 ‘누구와 비교되는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평등의 문제가 다뤄지기도 전에 이미 비교대상이 결정돼있고 분명한 비교대상이 없는 문제 같은 건 아예 제쳐 놓는다. 예를 들어 임신, 파트타임 노동, 장애 같은 문제 영역은 무엇과 비교되는가를 생각해보자.

이런 한계 속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불리한 집단의 구성원이 요구할 수 있는 동일한 처우의 내용은 특권 집단이 이미 누리고 있는 처우나 특권집단이 누릴 수 있는 수준에 국한될 뿐이다. 불리한 집단의 요구는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다른 것일 수 있는데 그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대상자(예를 들어 임신하지 않는 남성, 정규직 노동, 비장애인)와 ‘동일성’을 보임으로써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접근은 차이로 인한 배제를 일으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접근법의 문제점은 지배적인 사회정치적 구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사회에서 지배적인 집단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된다. 기존의 사회 구조가 특권과 박탈에 어떻게 침투해 있으며 지배적인 집단의 기준이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지배하는 가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실질적 “차이”의 접근

두 번째 접근법은 ‘동일한 처우’와 특별한 처우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차이 모델, 실질적 및 비대칭적 접근이라고도 한다. 형식적 접근법에 기초하고는 있지만 다른 점

은 실질적 평등을 성취할 목적으로 어떤 차이들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차이모델에서 문제되는 차이는 ‘불변의 바꿀 수 없는’ 차이로서 예를 들어 임신, 출산휴가, 교육에서의 소수자 언어, 장애 등이다.

이 접근법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규범적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결과의 평등’에 근접할 수 있는 처우를 요구한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간접차별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간접차별이란 의도와 무관하게 집단간에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서 차이 모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당화를 요구한다. 차이 모델의 중요한 특징은 차이를 받아들이는 상황을 ‘동일한 처우’의 ‘예외’로서 다룬다는 점이다. 형식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의 효과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개인주의적 이상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누릴 기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의 성원이라는 지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차이 모델은 형식적 접근법의 엄격한 개인주의를 거부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허용한다.

차이 모델의 강점은 형식적 접근법에서 나타난 규범적 불확정성, 비교대상의 선점, 이미 비교대상에게 인정된 처우만으로 요구를 국한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차이 모델의 특징은 특별한 적극적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허용했다는데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적 보호 뿐 아니라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실질적 평등의 개념과 연결시켰다. 적극적 조치는 비차별적일 뿐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거나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차이 모델은 차이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차이 모델의 약점은 ‘어떤 차이가 정당화될 수 있고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규범적 답이 여전히 불확정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오직 생물학적이거나 불변의 차이만을 다루느냐 아니면 어떤 차이든지 다룰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차이에 따른 다른 처우를 규범적으로 인정한다고 했지만 그 처우의 내용은 여전히 모호하다. 어떤 점에서는 ‘유리한 특별한 처우’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차이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리한 특별한 처우’의 구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 접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차이 모델에서도 사회속의 지배적인 집단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보면 조건부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비판은 특별한 처우란 것이 그런 처우를 받는 집단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불평등한 상황속의 현상유지를 영속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문제로 차이 모델은 ‘다르다’고 하는 집단을 바라보는 판에 박힌 진부한 시각을 영속시킬 잠재성이 있다.

실질적 “불리함”의 접근

세 번째 접근법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최근에 등장한 것이다.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권력, 지배, 불리함의 비대칭적 구조’를 강조하는 ‘맥락에 따른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따져봐야 할 조치가 취약집단의 불리함을 늘리기 위해 작동하는가 아니면 불리함을 줄이기 위해 작동하는가를 분석한다. 불리함을 늘리는 관행과 정책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사회정치적 구조를 바꿀 것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구조적 불리함에 도전하는 일에 간접차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간접 차별을 불법화하는 것이 이 접근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접근법은 앞서 살펴본 두 접근법에서 나타난 동일성과 차이의 접근의 약점에 대응하여 만들어졌다. 본질적인 동일성이나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거나 체제적인 결과로 강조점을 옮기는 것이다. “X라는 존재나 특성은 사물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다. X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X는 사회적 사건, 세력, 역사에 의해 존재하거나 형성됐다. 이 모든 것들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평등이라는 맥락에서 ‘X’는 특정 집단에게 부여된 특질일 수도 있고 차별이나 불리함이라는 사회적 사실일 수도 있다. 이런 접근에서는 어떤 특질이 ‘자연적’ 이거나 ‘불변’이라는 주장을 거부하며, 그런 특질들에 대해 ‘사회적 구조’이며 사회에서의 권력·지배·불리함의 체계적인 유형으로서 관심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이 접근법은 개인주의와 자유방임국가에 대한 강조를 분명히 거부한다. 이점에 있어 두 번째의 ‘차이 모델’의 접근법과 같지만 ‘불리함의 접근’은 그런 거부를 최대한 밀어붙인다. 특별한 처우를 ‘동일한 처우’의 예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사회정치적 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단지 때때로 요구되는 것으로 본다.

‘불리함의 접근’의 강점은 앞의 두가지 접근법과 비교할 때 규범적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 ‘불리한 조건을 경감하고, 위계와 지배의 관계를 없앰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는 식으로 정당한 처우에 관해 얘기한다. 또한 기존의 비교대상에 초점을 두고 그들과의 동일성과 차이를 얘기하는 문제점을 벗어났다. 동일성과 차이라는 용어로 분류하는 것은 ‘불리함의 접근’ 법이 요구하는 분석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접근법은 기존의 사회구조적 구조의 현상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구조적 불리함’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다. 결과적으로 구조적 불리함과 연관된 모든 종류의 문제가 평등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접근법에서도 규범적 불확정성의 문제는 여전하다. 불리하다고 하는 집단과 그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불리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문제는 ‘다른 집단, 차이를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집단이 불리하냐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법원의 능력이다. 이 접근법에서 요구되는 맥락에 따른 분석은 법원이 전통적으로 다뤄왔던 것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문제되는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그런 사회에서의 개인의 지위,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의 정치적 및 사회적 영향에 해당되는 얘기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법원의 분석은 관련 당사자의 분석과 아주 다를 것이다. 또한 법원은 그 자체가 사회구조로서 사회정치적 구조 변화를 위한 효과적 장치라기보다는 ‘모든 것의 척도’로 간주되는 사회에서의 지배집단의 견해를 유지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골치아픈 문제는 이 접근법에서 보면 평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평등원칙을 고수하지만 실제로는 평등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평등에 대한 법적 접근

지금까지 살펴본 평등에 대한 세가지 접근법이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가장 형식적인 접근법에서 보다 실질적인 접근으로 미끄럼을 탄다고 할 때 어느 지점에서 순간 포착을 했느냐에 따라 이들 관점이 보일 것이다. 가장 형식적인 접근에서의 평등에 대한 법적 보호는 완전히 무익하며, 가장 비판적인 접근에서 볼 때는 사회 혁명 말고는

충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평등에 대한 접근법에는 일정 정도의 규범적 불확정성 내지 모호성이 있다. 이 문제는 하나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식으로 결코 표현될 수 없는 가치의 판단 문제이다. 실질적 평등에 대한 법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이런 가치 판단에 달려있다.

장애인과 인권

-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
- ↳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발생원인 및 대안

▶ 박숙경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성공회대학 사회복지연구소
박숙경 연구원

이야기 거리들

- 첫 번째 이야기. 인권의 관련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이야기들
 - 두 번째 이야기. 지적장애인 인권의 개념, 인권실태, 대응에 대한 이야기들
 - 세 번째 이야기.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고민들

이야기 내용들

- ## 1. 장애와 인권의 관련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이야기들

1.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의

- 인권에 대한 다양한 개념화가 존재함. 인권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개념도 달라짐

- 일반인권의 확대 적용 vs 특수집단의 인권 확대(예: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시 EU(유럽연합)과 아시아 등 개발 국가들 과의 논쟁)

“장애인의 인권은 특수 집단의 인권이면서도 세계 보편적 인권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지식적 경험이며 한 사회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임. 장애는 인권을 비춰주는 역사의 거울이며 장애인의 인권은 인권의 완성을 위해 인류에게 던져진 본질적 질문이다.(이익섭, 2007)”

【활동 1】 장애인의 인권을 정의해 봅시다!

2. 장애인 인권의 내용

- 1) 사회개발 & 사회보장(사회권) : 장애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고려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권리. 긍정적(positive)-적극적 접근
* 헌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됨
- 2) 차별금지 : 보편적 기본권을 누리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권리의 보편성을 강조함.
negative, 규제와 권리구제를 통해 달성됨
* 헌법, 국제장애인권리협약¹⁾, 장애인차별금지법²⁾에 의해
- 3) 관계와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

- 1) 2006년 12월 13일, UN 총회에서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라는 명칭 하에, 여덟 번째 국제 인권 제도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은 2007년 3월 30일부터 비준 등록을 개시하며, 20개국의 비준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해, 발효된다.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협약 비준 당사국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 차별 적인 법제도, 관습 및 관행을 철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권리, 제품 및 서비스 개조 적용에 대한 권리, 모든 형태의 접근성, 수화나 점자와 같은 적절한 매체 및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권리 등,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2)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족·가정·복지 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하며, ①총칙 ②차별금지 ③장애인 여성 및 장애아동 등 ④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⑤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⑥별칙의 총 6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가 vs 대상자, 치료자 vs 환자, 실천가 vs 당사자, 제공자 vs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발생함(장애차별의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등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는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어짐
- 최선의 이익 vs 자기결정권 딜레마

3. 장애 개념 정의와 접근 모델

1) 장애인에 대한 접근은 장애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연결됨

2) 의료적 모델 vs 사회적 모델

- 의료적 모델(재활모델) : 개인의 손상과 의학적 상태를 강조. 치료적 접근과 개인의 책임이 강조됨(장애를 의료적 상태로 바라볼 경우 극단적인 관점은 장애를 문제시하며 제거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음. 우생학의 영향아래 나치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대량 살상이 이루어진 것은 극단적 예의 하나임. 일방적인 사회통합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임)
- * 세계보건기구 장애발생원인에 대한 ICIDH 모델
- 사회적 모델 : 장애발생 원인 및 대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장애와 사회환경이 상호 작용, 환경에 따른 영향을 강조함
- * 세계보건기구 장애발생원인에 대한 ICF 모델

【활동 2】 장애를 정의해 봅시다!

3)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

- 국제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은 장기적인 손상(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과 여러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가 제한된 사람을 포함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사유가 되는 장애를 “신체적·정신

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제2조 1항 장애인의 정의)

▣ 두 번째 이야기. 지적장애인 인권의 개념, 인권실태, 대응에 대한 이야기들

1. 지적장애인은 어떤 사람인가?
2. 지적장애인 인권 실태와 주된 인권침해 사례는 어떠하며 인권침해 사례의 특성은 어떠한가?
3.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떠한가?

▣ 세 번째 이야기.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고민들?

▽ 참고문헌

- 이익섭. 2007.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의 대응”. 한국DPI(www.dpikorea.org)
 박숙경.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발생원인 및 대안. 2008. 장애우대학자료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main.do>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발생원인 및 대안

장애인권활동가 / 성공회대 외래교수

박숙경 교수님

필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지적장애나 자폐 등 지적 능력에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인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심각성은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 즉 장애인복지서비스, 교육, 노동, 가정과 복지시설 등의 사적인 일상생활 공간, 장애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아마도 장애우대학에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사례와 대안」을 따로 하나의 주제로 선정한 데는 지적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인권문제가 다른 어떤 장애유형 보다도 심각하다는 인식을 함께 한 결과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는 다음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다룰 것이다.

첫째, 지적장애인은 어떤 사람인가?

둘째, 지적장애인 인권 실태와 주된 인권침해 사례는 어떠하며 인권침해 사례의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떠한가?

자 그럼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은 어떤 사람이고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와 사례는 어떠하며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1. 지적장애인은 어떤 사람인가?(정의와 판단기준)

1) 정의

지적장애인의 정의는 역사적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서구의 경우 중세시기 지적장애인은 특유의 ‘순박함’과 비장애인과는 다른 ‘일탈행동’으로 인해 바보로 취급되거나 또는 마녀로 박해받았다. 이런 분류는 개인의 일상행동의 관찰에 기초한 것이며 아마도 곳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 지적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서구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서구의 경우 19세기 초 지적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05년 Binet의 지능검사가 개발로 인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획기적 전환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지능검사만으로 지적장애를 정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최근에는 지능과 함께 사회 적응기술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적장애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지적장애인은 지능과 적응행동에 지체가 있으며 발달기에 나타난다”는 점을 공통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적장애의 개념정의에 영향을 주어 온 미국지적장애 협회(AAMR)의 정의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지적장애인협회는 2002년 ‘지적장애는 일반적인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질적 적응기술로서 표현되는 적응행동에서 상당한 제한이 나타나는 장애이며 이는 18세 이전에 시작된다.’로 정의³⁾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특수교육 진흥법에서는 지적장애를 지능이 75이하인 자로서 적응행동에 결함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응행동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는 주로 지적기능과 적응기술의 제한성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시대나 문화수준 등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적장애인 개념 정의는 과거 개인의 특성과 의료적 손상을 강조하던 데서 점차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해오고 있다.

3) 이에 앞서 1992년 미국지적장애협회(AAMR)에서는 '지적장애는 현재 기능에 실질적인 제한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유의하게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자조기술, 의사소통 기술, 사회적 기술, 건강 및 안전기술, 여가기술, 가정 생활기술, 지역사회이용 기술, 자기관리 기술, 기능적 학업기술, 작업 기술 등 적응 기술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 결합(제한성)이 있고 18세 이전에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2) 원인

지적장애의 원인은 흔히 생의학적 원인⁴⁾과 환경적 원인으로 분류하는데 생의학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원인은 약 20~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신현기, 2005) 환경적 원인은 양육방식,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관리, 영양섭취와 교육경험의 결핍, 사회경험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필자는 생활시설, 그룹홈, 자립홈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경험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거주환경과 사회적 관계와 경험이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판단을 비롯한 적응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분류와 특성

지적장애의 정도에 따라 경도, 중도, 최중도로 분류하는데 경도지적장애인은 전체 지적장애인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신현기외, 2005) 이러한 결과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가 설립되던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접수된 지적장애인 인권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적장애인 응답자가 79.4%로 나타났던 점과 일치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도 지적장애인들은 주의집중, 인지능력, 전이와 일반화능력, 우발학습, 단기기억, 언어, 추상적 사고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비장애인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낮게 되며 반복적인 실패경험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어 앓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실패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기 싶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도지적장애 학생들은 사회기술 결핍으로 인하여 또래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중도지적장애인들은 지능지수 30에서 50 정도이며 지적장애의 6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행수준은 경도 지적장애인들보다 약간 낮고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의사소통기술이나 직업교육, 생활기능, 기초학습기능 등에 초점을 맞춘다 최중도 지적장애인들은 지능지수 30이하이고 지적장애의 약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해행동이나 공격행동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적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적응 행동과 생활기능,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

4) 생의학적 원인은 유전자와 염색체 이상이나 감염(홍역, 뇌막염), 태내기와 출산 시 장애(조산, Rh부적합, 산소부족), 사회-환경적인 요인(납중독, 태내 알코올 증후군, 두부손상) 등이다(신현기외, 2005).

키는 내용이 필요하다(신현기외, 2005).

4)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다양한 관점 또는 이데올로기의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서구의 서비스 패러다임의 최근 변화,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흐름,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의 내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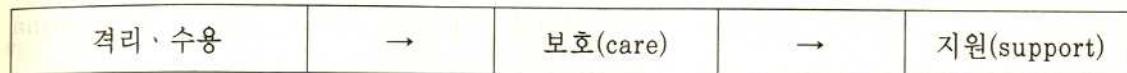
(1) ‘보호’에서‘지원’을 강조하는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지적장애인과 그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이해와 대안모색을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서구사회의 인식과 서비스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서구 국가들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은 그들의 지적장애인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잘 드러나며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나라 지적장애인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구 국가들의 지적장애인 거주지원서비스 패러다임은 과거 수용·격리중심에서 보호(care)로 또다시 지원(support)의 개념으로 변화해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지적장애인 단체나 관련 기관, 학회 등에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보호(care)개념의 패러다임 변화는 Bradley & Knoll(1990)과 Gennep(1997a)등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 이중 Gennep(1997a)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 자신의 권리와, 보호 제공 조건들의 확대에 대한 결정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시민은 그가 원하는 곳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보호의 개념이 지원의 개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지적장애인의 어떤 삶과 직업적 상황에 맞도록 준비될 필요가 없으며 지적장애인에게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더불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개인 또는 조직의 지원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지적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시 말해 전문가 또는 가족 등이 아닌 지적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기본적인 결정을 조절하고,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이웃

들과 함께 보편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순한 생각이 곧 피플퍼스트(people first)의 기본이다(Jos Van Loon외, 2001: 241)

<그림 1> 지적장애인에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흐름



(2) 지적장애인과 자기결정

자기결정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자기결정은 다른 장애 또는 비장애인에 비해 삶의 질에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적장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의사표현 등의 능력이 취약하며 이에 따라 가족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거나 제한 당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제한 또는 박탈의 이면에는 자기결정권은 자기책임과 의사표현 및 판단능력을 구비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전통적 자유론적 이해와 개념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기결정은 “타인에게 관계없는 사항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의 책임아래 행위 할 수 있다”는 자유론적 입장에서 이해되어 왔다. 전통적인 자유론⁵⁾적 자기결정권은 자유의사에 기한 선택과 자기책임을 의미한다. 이때 자유의사는 합리적 사고와 의사표현능력을 가진 사람을, 자기책임은 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과 표현능력과 책임능력 면에서 한계가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제한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 되어 왔다. 그러나 자기결정에 대한 관점은 비록 자유의사에 기한 선택과 책임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⁶⁾는 자각과 비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변화해왔다. 또한 자기결정이 중요시 되는 영역에 있어서

5) 일반적으로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에서 기원했다고 본다. 밀은 그의 자유론에서 “문명화된 사회에 있어서 인류가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사회 일원에 대해서 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상에 반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뿐이다” 자기결정의 제한을 자기보존을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백승희, 2001: 131)

6) 이러한 흐름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 참여권을 강조하는 흐름과, 치매 노인과 장애인등 의사능력이 취약한 성인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발전 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도 정치, 경제, 교육 등 공적인 영역에서의 선택을 강조한 데 비해 일상 주거 공간, 가정, 복지시설 등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기결정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후반 이후 서구 유럽의 지적장애인 서비스 개혁의 핵심적 이념으로 자기결정권인 표방되어온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스웨덴의 경우 1994년 장애인복지서비스 관련 법개정의 주요 이슈는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이었다(Kristina Karlsson and Claes Nilholm, 2006).

(3)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 정상화이론(Normalization)

정상화 원리는 1960년대 후반 북미지역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개념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이 원리는 1940년대 이래 스칸디나비아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끔찍한 사회적 처우와 시설수용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북미에서 울펜스버거(Wolfensberger)에 의해 정교화·일반화·체계화되어 여러 사회복지 분야의 계획과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지도 원리가 되었다. 정상화원리는 지적장애인의 가치를 절하하거나 일탈된 존재로 낙인화되는지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낙인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가치이하로 평가된 사람의 “사회적-이미지”를 증진시키는 것과 이들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은 주로 가치 절하된 지적장애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외모와 옷차림, 언어사용 등 보편적 일상 패턴을 유지할 것, 주거환경과 외모 등을 보편화할 것, 집단적 생활과 행동을 피하고 가능한 개별화 할 것, 개인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강조, 가치있는 역할을 부여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상화원리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치절하와 일탈화된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또 지적장애인 등 가치절하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설화를 반대하고 지역에서의 인권이 존중된 보편화된 삶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상화 원리는 문화적 획일성을 강요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실용적 실천적 함의가 크긴 하지만 해결 대안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 보다는 기존 체제를 수용한 상황에서 장애인 개인을 변화시키고 서비스와 프로그램 전략을 수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다음의 자립생활운동(미국), 사회적 모델(영국)과 인권관점이 장애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제도적 변화 즉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과 대비된다.

» 자립생활 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

자립생활운동은 1970년대에 장애인의 의료-재활모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체계화되고 발전된 이념이자 실천모델이다. 초기 자립생활운동은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기존 재활모델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는데 대해 장애문제의 원인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문제는 어느 누구보다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신장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자립생활의 본질적인 철학은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서 스스로를 관리하고 자립하려는 바람과 이를 위한 능력을 갖추는데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모든 인간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다. 둘째, 어떠한 손상을 입은 사람이든지 누구나 자신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셋째, 장애인은 신체적인 반응, 사회적·물리적 반응, 지능적인 반응, 감각의 손상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 등 다양한 형태의 기능상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도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전반을 사정하고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넷째, 장애인들은 사회생활 전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은 2000년을 전후로 뇌성마비 등의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의 주도의 자립생활을 돋기 위해 시작되어 점차 전 장애영역으로 확대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립생활운동은 아직 지적장애인에게는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갖는 학자들이나 실천가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현실은 장애운동 전반 예를 들어 최근 활동보조인 제도화 운동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활동보조인 도입과정 등에서 간간히 드러난다.

» 사회적 모델

사회적 모델은 영국에서 UPIAS(Union of Physical Impaired Against Segregation)와 Finkelstein(1980), Oliver(1983) 등에 의해 처음 소개되고 발전된 것으로 이 관점에서는 장

애를 개인의 책임 또는 의료적 손상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발전하는 사회경제적 관계의 물질적 결과물로 이해한다. 사회적 모델은 지난 세월동안 장애인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나 차별에 의한 억압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내재화해왔던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이은미,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 모델에 대해 ‘장애에 대한 문화적 설명’과 ‘손상에 대한 사회적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인권패러다임

인권은 현대의 사회적, 정치적 담론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들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문화나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지지하는 보편적 개념이다. 그러나 인권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쉽게 이해하고 보편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한편 추상적이고 상호 권리가 충돌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선언적 수준에서 그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짐아이프는 인권의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권의 실현은 개인 혹은 집단이 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완전한 인간성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둘째,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기에 그 권리를 요구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 그 밖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인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편적 합의가 존재한다. 즉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지지가 없다면 그것은 인권으로 볼 수 없다. 넷째, 인권은 모든 정당한 요구자들에게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망이 좋은 집에 살 권리 등과 같은 공급이 제한되는 것들에 대한 권리는 제외된다. 다섯째, 인권은 다른 인권과 충돌하지 않는다. 즉 무기를 소유할 권리나 타인을 노예로 소유할 권리 등은 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김용득, 2005)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은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객체로 대상화되어온 현실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1980년대 후반 장애인당사자 운동에서 장애를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 주류 담론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00년 이후의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등 반차별운동과 인권옹호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

인권담론은 사회제도나 사회적 태도가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만들

어 낸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모델과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Bickenbach, 2001) 기존 담론들의 한계로서 지적되었던 ‘주류문화로의 통합을 강조하는 일방성’, ‘개인적 문제(손상)와 사회적 문제(사회정책과 환경)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간과’ 등을 뛰어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 지적장애인 인권실태와 주요 인권침해 사례

지적장애인에 대한 국내 인권실태에 대한 자료는 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발간 자료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지적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가고 관련 연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규모의 지적장애인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상황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미비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지적장애인 인권실태와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내용은 주로 2004년, 2005년도 인권국 상담 사례 보고서와 2006년도 연구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했던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연구”를 주로 인용했음을 밝힌다. 필자는 약 10여년간 연구소에서 활동하였고 이중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인권센터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들 보고서가 생성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왔기 때문에 보고서 발간 의도, 보고서에 담긴 사례의 의미와 대응과정의 맥락을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간간히 인용의 일반적 기준들을 벗어나 주관적 해석이 더해 질 수 있음을 밝히고 이해를 구한다.

1) 인권실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전화, 내방,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상담을 한 사례중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사례 180건을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인에 인권침해는 재산권, 신체자유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시설입소문의), 노동권,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권리, 교육권, 모·부성권(자녀를 양육할 권리) 이상 7개로 유형화하였다. 이 7가지 유형중에서 사례수가 최소한 10건을 넘는 유형은 재산권, 신체자유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노동권에 해당하는 총 159건이었으며 이중 중복차별을 받은 상담자를 제외한 총 131건이 분석되었다. 연구소는 이중 인권침해 빈도수와 심각성이 높은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과 관련된 43건을 선택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권침해 피해

지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상담 의뢰인은 가족이나, 친인척이 68.0%, 이웃 18.3%, 사회복지 종사자 9.2%, 당사자 1.5%였다. 이는 당사자에 의한 문제제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즉 지적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의사소통 가능 여부의 경우 79.4가 의사소통이 가능, 20.6%는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답했는데 이 역시 경도장애인 이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태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26.0%, 취직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37.4%, 미혼 72.5%, 결혼 중인 사람은 22.1%로 나타났으며 기혼자중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3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9.2%, 지체장애 23.1%, 뇌병변 장애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과 131건에 이르는 사례수,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꾸준히 수집된 사례 분석 즉 특정 시점 사회적 상황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지적장애인 인권실태의 일반적 상황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2) 유형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사례

재산권 침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상 침해를 받은 경우가 37.1%, 정부보조금을 횡령당한 경우가 22.9%, 임금 착취를 당한 경우가 18.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유재산, 보험금, 유산, 보험가입 제한, 보상금 수령 제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지적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개설 한 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지적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 자동차세나 전화세 감면 등으로 악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가 많았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권착취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권침해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재산권을 가로챈 가해자는 가족·친인척과 업주가 동일하게 26.7%, 이웃 15.0%, 모르는 사람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장이나 축사, 양계장, 김 양식장 등에서 일했던 지적장애인들의 임금에 대한 침해상황을 보면 어떤 임금도 받지 못했다가 절반이 넘는 60.9%로 나타나 노동권 착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동안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어왔다.

사례1.

00재활원에서 10년째 거주한다. 장애는 뼈가 잘 부러지고 성장이 안되어 생겼다. 재활원에 입소하기 전에는 동생들과 생활했으나 부담되는게 싫어서 나왔다. 수급비 통장은 재활원에서 관리하며 본인은 수급비도 전혀 모른다. 재활원에서 나와 방을 얻어 살고 싶다.

사례2.

이웃 사람이 지적장애2급인 한00씨에게 삼성카드 보증을 세웠다. 본인은 잘 모르고 주민증과 등본을 요구하여 주었다고 함. 싸인은 안했다고 함. 현재 삼성카드에 4천5백만원이 연체되었다.

사례3.

딸(지적장애 2급)이 2003.4에 결혼하였다. 사위는 장애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판단능력이 떨어진다. 결혼 시 사위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고, 나이도 속였다.(12살 차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세번째 동생부부가 시아버지(증풍)와 딸 부부를 데리고 살겠다고 한다. 시댁에서는 애도 못가지게 했으나 임신을 하였고 검사비용을 친정에서 다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태아가 기형이라고 한다. 시가에선 유산비용도 못주겠다고 한다. 딸 부부는 서로 너무너무 좋아한다. 서로 헤어질 생각 전혀 없다. 재산분배를 제대로 안해주니까 딸을 이혼시키고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고 싶다.

신체자유의 침해

신체자유권 침해 유형은 총 53건 중 가정폭력이 34.0%, 성폭력 24.5%, 학교폭력 20.8%, 직장내 폭력 15.1%, 폭력 5.7%의 순으로 나타났다.加害자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34.0%, 직장관계자 17.0%, 모르는 사람 14.1%, 학교친구 13.2%, 학교직원 또는 교사 11.3%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권이나 신체자유 침해 모두 친숙한 사람들에 의한 가해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외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또 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음을 추정하게 한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16.7%가 주위의 도움을 요청했다, 피신하거나 도망했다는 사람이 11.0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2.2%가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정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 61.1%, 언어적·정서적 폭력과 방임 16.7%, 성적 폭력이 5.5%로 신체적 폭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피해 당시 33.3%가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피해자는 당사자의 자녀가 66.6%, 부모가 16.7%로 많은 경우 지적장애인의 아동에 대한 폭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유형은 강간 61.5%, 성추행 38.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加害자가 2명이상인 경우가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는 현금이나 현물을 유인책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35.7%, 그냥 납치하는 경우 7.1%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발생한 시기는 20세 이상 38.5%, 10세 미만 15.4%, 10세이상 20세 미만 7.7%, 알 수 없다가 38.5%로 10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상당히 많아 피해상황이 심각하고 치료가 어렵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피해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내에서 당한 폭력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 87.5%,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12.5%로 나타났다. 직장 역시 신체적 폭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치절하와 학대가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사례4.

S방송사의 제보로 들어온 상담으로, O씨(여, 지적장애장애)는 고령의 어머니(지적장애, 70대)와 오빠(지적장애, 30대)와 같이 산다. 아버지는 10년전 사망했고, 지체장애인이다. 이들 가족은 마을 이장대 농삿일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이장은 이들이 일을 잘못하면 자주 때리기도 했다. 또 세 가족 모두 머리를 빽빽 깎았음. O씨는 이장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후 임신한 아이는 이장이 입양시켰고 O씨에게 불임수술을 하게 하자 마을 사람들은 “이장 때문에 마을에 살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거든 마을을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O씨는 성폭행 후유증으로 술과 담배가 늘었고, 이를 위해 낚시터에서 5천원을 요구하면서 성행위를 함. (2005년 연구소 인권상담보고서)

▣ 사례5.

장애인 생활시설인 E시설은 4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인 많아서 내담자J씨의 언니 P씨(여, 지적장애장애 2급)는 비교적 경한 편이라 함. 언니는 다른 시설에서의 안 좋은 경험에 있어서 이 곳에 소개 받았으나 역시 외진 곳임. 시설 원장은 하반신 장애인이고 원장 남편이 목사이고 이사장임. 목사는 “너는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라고 따르라”고 하면서 보일러실과 식당에 데리고 다니며 성폭행했음. 또 시설에 같이 있는 G집사라는 사람은 성인용품을 가지고 항문에 삽입하면서 언니를 성폭행했음. 또 같은 생활자인 L씨(남, 지적장애)가 낮에 언니가 자고 있는 방 창을 넘어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함. 후에 임신으로 병원에서 유전자 검식을 한 결과, L씨의 아이로 밝혀짐. 한편, 시설에서는 관리 소홀에 대해 2천만원이나, 2천5백만원에 합의하자고 먼저 제안했음(2005. 인권상담보고서)

노동권 침해

노동권침해 상담을 의뢰한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업 유형은 농·임·어업 47.8%, 단순 노무직 39.1%, 판매·서비스 직 1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취업기간에 임금을 제대로 받은 경우가 39.1% 나머지 60.9%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기는 짧게는 몇 년부터 20년이 넘는 경우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사 시 업주가 약속한 임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44.4%가 약속보다 적게 받았으며 55.6%는 잘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모른다'의 의미는 입사 시 업주가 당사자에게 임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보호자에게 고지했으나 보호자가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상황 등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주변인들에 의해 일방적 결정이 내려지는 행태의 일면이다.

사례6.

지적장애인 3급의 양00씨(29세)는 일반회사를 얼마간 다녀보았으나 끝내 거절을 당했고 결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알선해준 금산의 한 업체에서 2년 가까이 일했다. 아침 7시 25분에 대전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금산 공장으로 가서 8시부터 6시 반까지 일을 한다. 그런데 야근이나 휴일에 일하는 것을 특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연말엔 12월부터 일이 바쁘다 하여 주말 휴일, 크리스마스, 신정 할 것 없이 계속 일을 시키면서도 수당이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끔은 장애인들에게 체벌도 가하는데, “한번은 형이 몇 날 며칠을 화를 내고 씩씩대기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잘못했다며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때렸다”고 양00씨의 동생이 말했다. 그럼에도 양00씨의 한 달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인 5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정부가 고용장려금을 축소하는 바람에 회사측에서는 “앞으로는 30만원 정도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양00씨의 어머니가 사장을 찾아가 이를 정중하게 물어봤다고 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하시는 분이 직원 월급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100% 국가 지원금으로만 하시냐?”고 했더니 “그럼 그만 두든지 아니면 30만원 정도 받고 참고 다니든지 하라”고 했다.

시설입소 문의

시설문의는 전체 인권침해 사례 건수 159건중 15.7%를 차지하여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입소를 문의한 사람은 가족이나 친인척이 76.0%로 가장 많았고, 당사자가 문의한 경우는 없었다. 입소를 의뢰한 시설 유형은 생활시설이 100%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장애인 거주서비스와 관련하여 그룹홈, 자립홈 등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으며 생활시설을 유일한 대안으로 알고 있었다. 시설입소 문의는 돌보던 부모가 사망한 이후, 형제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생계 때문에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부모나 가족이 장애 또는 질병 때문에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교육·치료 등이 가능한 시설을 문의한 경우, 폭력 때문에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환경의 폐쇄성 등에 의해 당사자 또는 주변인에 의한 문제제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뢰수는 그리 높지 않았다.

사례1

이00씨의 경우 공장의 사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연구소에 상담이 의뢰되었다. 당시 관할 경찰서에 학대하건을 고발하고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다니던 공장 숙소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으며 당장 그날 밤부터 그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러 군데 단기보호시설을 찾아봤으나 장애가 있는 성인 남성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7개월 동안 몇 군데를 전전하게 되었다. 일반가정, 그룹홈, 노숙청소년쉼터, 미신고시설까지 그리고 현재는 지적장애장애인 자립생활 농장으로 전전하게 된 시설들은 임시거처로서였을 뿐 안정된 주거지는 아니었다.

교육

✓ 사례7

진00씨의 아이 김00군은 지적장애장애를 가졌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S중학교에 배정되었다. 그러나 S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어서 I중학교로 전학하였다. 처음 학교에 간 날(전학수속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 김00군이 여자애들을 때렸다. 비웃는 모습으로 봤다고 때린 것이다. 침 흐르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그 지역 소속이 아니니까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했다.

☒ 사례8.

조00씨의 아들은 지적장애장애 3급이고 현재 고교 2학년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방해되고, 적응을 못한다고 전학을 종용하고 있다. 아이의 담임은 “부모의 체면 때문이라지만 아이를 방치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특수학교를 권유한다. 아버지가 고교 1학년일 때도 실습실에 못 찾아간다고 전학을 종용했었다.

형사절차와 재판과정에서의 차별**☒ 사례9.**

지적장애 1급의 오빠가 국도의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가해자는 무단횡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 경찰이 병원에 와서 지적장애1급이라고 하니까 “들을 필요도 없네”하면서 가버렸다.

☒ 사례10.

처남이 중2때 뇌막염을 앓아 언어장애와 지적장애이다. 언어장애는 5년전에 등록했으나 지적장애는 등록하지 않았다. 중2수준이다. 전과는 없는데 공원에서 놀다가 빼치기를 해서 지갑을 열고 확인하는 중에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신고되어 1,2차 재판을 하고 7년 구형을 받았다. 초기에 경찰서에서 보호자 입회하여야 하는데 보호자 없이 합의를 유도하였다. 같이 있었던 사람에 의해 처남 혼자서만 뒤집어 씌었다.

3) 지적장애 인권침해의 일반적 특성**▽ 중복피해**

전체 상담 중 두 가지 이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당한 비율은 48.9%로 인권침해 상황이 중복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피해는 주로 신체자유의 권리와 재산권, 노동권 침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해결과정

심층면접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 지적장애인의 대응을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 51.2%가 참았다, 주위사람에게 알렸다 32.6%, 경찰에 신고했다가 7.0%, 도망갔다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에 대해 ‘참았다’가 높게 나타나는 점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과, 반복적 학대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학습된 무기력 특성을 보여준다. 지적장애인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무관심 39.5%,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알려주었다 25.6%, 동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20.9%,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했다 4.7%, 인권침해 상황은 당연시하거나 이야기는 들어주었지만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알려진 상담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관심 등의 대응의 빈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사회적 지원 여부와 사건 해결 결과

문제해결과정에서 받은 사회적 지원은 상담과 심리치료 32.6%, 법적지원 등 실무적 지원 16.3%, 지원이 없었다 11.6%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이미 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예측컨대 대부분의 상당 수 인권침해 상황이 문제제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을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 해결 결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았다가 39.5%, 합의나 보상을 받았다 23.3%, 가해자가 처벌 받았다 16.5%로 나타났는데 역시 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하여 지원을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적장애인인권침해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장애인단체에 인권상담을 의뢰하였음에 해결되지 않거나 달라지지 않은 사례가 4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은 인권침해 사례는 보다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며 지적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편적으로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

할 수 있는 법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원인과 대안

1) 발생원인(무의식에 담긴 배제와 분리 담론)

이상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정시지체인 인권침해 실태와 사례, 주요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사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쯤은 피상적이긴 해도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또 추상적이고 당위적 수준에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도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지적장애인 인권침해가 왜 발생하는지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심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기제중 하나가 인권의 문제를 추상적 담론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지적장애인도 평등하게 살자! 인권의 주체다! 라는 피상적 구호들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 지적장애인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 시설을 없애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지역에서 살도록 지원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다들 두려워하거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로 피해가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그룹홈, 자립홈 등의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가 대규모 시설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삶의 질 등 효과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지적장애인 관련 정책논의와 서비스 결정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자는 말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치부되곤 한다. 그런 한편에서는 이용자 참여라는 개념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 역시 깊이 들여다보면 지적장애인은 대상자요 서비스의 주체는 공급자 또는 전문가의 구조로 짜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용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내치는 ‘분리와 배제 담론’ 이런 상황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막아낼 근본적 개혁을 막고 있는 강력한 사회담론인 것 같다.

도대체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왜 벌어지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울펜스버거는 ‘불유쾌한 현실이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가치와 이상에 상반되는 것일 때 이 현실들은 부정되거나 무의식 속으로 억압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였다. 뭔가 불유쾌하고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두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이다. 실제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된 사람들

의 경우, 이들에게 주어지는 역할 기대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면 인간이 하의 역할(동물, 채소, 물건), 위협적 존재나 공포의 대상, 동정이나 자선의 대상, 자선의 짐, 조롱의 대상, 아프거나 병든 인간, 그리고 영원한 어린애나 다시 어린애가 된 것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역할기대는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가치이하로 평가되고, 이런 역할기대 속에서 살아야 하며, 위협적인 존재처럼 행동하고, 결함 있는 역할이 가정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엇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르게 취급되고 분리되고 사회적 관계와 경험들로부터 차단된다. 이는 또다시 지적장애인의 적응능력을 떨어뜨리고 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며 결과적으로 차별이 당연시 되고 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담론이 겉으로 들어나지는 않지만 매우 뿌리 깊고 넓게 사회에 퍼져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쉽게 받아들이게 하고, 문제제기를 어렵게 하고, 혹 문제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비장애인의 그것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지적장애인 관련 소송 결과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가 입증의 어려움 등 물리적인 연유도 있지만 실제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가능하기 어렵다는 법조인들의 편견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계란 껌질과 같은 차별적 편견을 뚫고 대등한 주체로 바라보는 노력, 상대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의사 능력과 행위능력, 책임 능력을 보완해주기 위한 노력(용어사용에서의 고려, 교육 훈련 확대,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증진을 위한 노력,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후견인제도화, 법적 정비를 통한 보호, 옹호와 대변서비스의 확대) 등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지적장애인이 단지 발달기에 있으므로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데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선택과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은 지적장애인 뿐 아니라 발달기의 아동과 성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다.

2) 제기되는 대안

(1)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이 학교, 노동현장, 가정과 복지시설등 일상영역 등에 닿을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2) 자기결정권 존중과 권리옹호 체계 강화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지적장애인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즉 당사자 옹호(self advocacy)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스웨덴을 시작으로 유럽사회에서 지적장애인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편견을 깨는데 크게 기여한 피플퍼스트(people first) 운동의 핵심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자기주장대회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 주체화를 위한 시도가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적장애인 자체 조직인 본인회가 전국 100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위험관리에 대한 관련자들의 성숙한 이해와 태도를 필요로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원인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서 발생한다. 대개 많은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외출을 막는 이유는 지적장애인의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란 우려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에서다. 그러나 미래에 위험한 상황을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현재에 사람을 통제하고 가두는 것은 빈대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처럼 우매한 일이다.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소에 교육과 사회적 경험을 통한 위험대처능력 증진, 주변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에 의한 자기주장과 권리옹호만으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를 다 막을 수는 없다. 많은 경우 당사자와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에 의한 옹호(family advocacy), 전문기관에 의한 옹호, 시민옹호(citizen advocacy)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높다. 우선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인권센터와 같은 전문 옹호조직이 전국 단위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3) 성년후견제도 도입

우리 민법은 지적장애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9조부터 14조까지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의 규정을 두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 104조(불공정법률행위)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지적장애인에게 대하여 행하여진 부당한 거래는 무효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빼앗긴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인도, 부당이득, 손해배상(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손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치산 금치산의 제도는 권리와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제약하여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어 그 활용도가 무척 낮아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제 10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현도 지적장애 장애인에게는 더없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장벽이라 할 것입니다(신현호, 2005).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성년에 이르렀을 지라도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후견인을 두어 노인이나 지적장애인장애인이 자신의 재산상의 민사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2000년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더 이상 국가는 그 시행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신현호, 2005).

(4) 지적장애인 서비스 공급확대와 질 개선

앞서 지적장애인 인권 상담중 시설입소를 문의하는 상담이 3번째로 많았다. 실제 사람들의 인권은 인권침해상황에 대비한 감시체계 강화, 인권침해 발생시 처벌과 권리구제 절차에 의해 확보되기 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의해 보장된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의 학대에 대비한 감독기능의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권리구제절차 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긴 이나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지적장애인의 개인적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다소 크고 원론적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을 막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수당, 지적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계약, 서비스 최소 기준화 등을 통한 서비스 환경의 개선, 대규모 시설 수용이 아닌 최소한의 제약, 지역사회 중심, 사회통합과 인권을 지향하는 주거지원서비스, 여가지원 서비스, 직업과 교육지원, 상담 서비스 등이 크게 늘어나야 할 것이다.

(5)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시 권리구제 절차화, 쉼터 등 지원서비스, 법체계 정비(현행 형사법, 민법의 보완 및 지적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적장애인은 장애특성상 학대상황에 놓이기 쉬우며 스스로 학대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제보 또는 상담을 받아 학대상황에 놓인 지적장애인을 만나보면 실제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양육자를 자처하며 데리고 다니며 수급권과 노임을 착취하는 경우 법적인 권한이 없는 민간단체에서 법적 소송을 각오하고 그 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학대상황에서 분리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막상 갈 곳이 막연하다. 때로는 인적상황도 불분명하고 의료적 지원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학대상황에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곳도 전무하다. 예컨대 아동학대예방센터와 노인학대예방센터와 같이 학대상황에 놓여있거나 의심이 가는 지적장애인을 위기상황에서 분리하여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김희선, 2005).

또한 학대상황이나 위기상황에서 격리·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입소하여 심리치료와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유형별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장애가 있는 성인 남성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는 어디에도 없다. 일반적으로 노숙인 시설이나 일반 청소년 쉼터, 생활시설로 입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1) 이00씨의 경우 이러한 쉼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시설을 전전하였으며 그의 정신적·심리적 상처에 대해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 청소년쉼터 중 지방에 위치한 쉼터의 운영자들은 실제로 쉼터 입소자 6,7명 중 1,2명 정도는 지적장애장애가 있거나 경계급 청소년들이 입소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쉼터에 입소하면 먼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대부분이 가족보호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 부모 자체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에 의해 버려져서 가정 내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체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에 의해 버려져서 가정 내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귀가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쉼터에서 쉼터로, 생활시설로 전전하게 된다. 쉼터생활에서도 비장애인청소년들에 의해 따돌림과 집단구타를 당하기 때문에 쉼터생활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노숙생활을 선택하기도 한다. 심각한 문제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나중에는 범죄행위를 모방하여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가정에서 버려지거나 가정내 학대로 인해 가출한 장애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쉼터는 정신적·심리적 치료와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일시보호시설처럼 단기적으로만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충분히 자립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지적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기존 법규의 정비 역시 필요하다. 물론 더 진보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가족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지적장애인에게는 구금이의신청에 앞서 구금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구금을 시키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법안이 더욱 절실하다(신현호, 2005)

(6) 정부차원의 실태분석

지적장애인의 인권문제는 절대 개별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 지적장애의 특성에 따른 인권의 문제가 왜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신. 2006. "지적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에 대하여". 「2005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인권상담결과보고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김용득. 2005. "장애인복지 이념의 동향". 김용득·유동철 편. 『한국장애인복지의 이』
- 김정권, 김애경. 2004. 『발달지체인의 자기권리주장운동 운영 매뉴얼』, 한국지적장애인애호협회
- 김희선. 2005. "지적장애인의 인권상담과 대응과정". 「200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상담결과보고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박숙경a. 2007.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보장 방안".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체계 개편 방안」.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박숙경b. 2007. "거주서비스 유형별 성인지적장애인 자기결정경험 비교 연구". 미발간자료
- 박숙경c.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거주지원서비스 이용자 권리보장". 시설인권연대 장차법과 시설 간담회 발제자료. 미발간자료
- 신현기·최세민·유장순. 2005. 「통합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학사.
- 신현호. 2005. "법률적 보호 방안". 「200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상담결과보고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신현호b. 2006.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으로서의 소송과정” . 「200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 상담결과보고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엠마우스 복지관. “정상화 원리에 대한 개요와 소개” .
- 유찬호. 유찬호. “인권침해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 . 「200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상담결과보고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조병찬. 2005. “2004년 인권국 상담분석” .
「200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상담결과보고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조병찬b. 2006. "2005인권상담 사례분석 보고서". 「200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 국
상담결과보고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조한진, 고영신, 곽정란, 김승엽, 김희선, 임소연, 최희정.
2006.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실태 연구」 . 국가
인권위원회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연구수행기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 최선자. 2005.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한 당사자단체의 방안” .
「200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상담결과보고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Jos Van Loon & Greet Van Hove. (2001). Emancipation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Down-sizing Institutional Care. DISABILITY
& SOCIETY, VOL 16, No2, 2001. pp233-254
- Kristina Karlsson and Claes Nilholm. 2006. "Democracy and dilemmas of
self-determination". Disability & Society Vol. 21, No. 2, March. pp. 193-207.
- Scott Spreat, James Conroy, Amenda Fullerton, (2005). A cost benefit analysis of
community and institutional placements fo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in
Oklahoma.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 Shunit Reiter. (1991). Institutional Reform – Prerequisites for Providing a Life of
Quality for Mentally Retarded Resident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12. pp. 25-40

인권에 대한 토론

▶ 박미진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기획과장)

인권에 대한 토론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박미진 기획과장

M • E • M • O